

##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1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대상업체

업체명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처분근거	처분내용
(주)도원산업	금속·창호·지붕·건축물 조립공사업 (인천남동19-07-01)	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21-1 (가좌동) 나동102호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	영업정지 5개월 [2024.07.15.~ 2024.12.14.]

### 2. 기타사항

- 본 행정처분 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시장 또는 온라인(<http://incheon.simpan.go.kr>)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(032-560-44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